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원고회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회사에서 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화식 소독기(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납품함에 있어 각자 수행해야 할 업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에 있으며, 협조를 통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 및 사양)

-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피고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원고가 제작기로 한다.
- ② 원고는 제품 및 표장에 피고 회사의 상표를 표시하여야 하며 형태 및 방법은 피고 회사가 정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제품에 관한 사항을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피고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제품별 생산 계약에 대하여는 국내에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제품을 위탁 생산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생산이 지연되거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별계약)

본 계약은 종류별 제품생산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별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문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4조(납품)

- ① 원고는 개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해야 하며 이에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고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피고 회사는 제작의뢰서 및 설계도면 등에 근거하여 자재검사와 납품 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피고 회사와 원고 간의 제품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비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원고가 우선 지급하고, 제품 납품가에 개발비를 상쇄하여 피고 회사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산권은 피고 회사의 소유로 한다.
- ④ 피고 회사가 상기 제3조에 의한 개별계약 주문 시 원고의 귀책으로 납품기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 일일에 3/1,000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가격)

- ①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포장비 및 피고 회사가 지정한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하여 별도로 피고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품의 사양 변경,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가격,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대금지급)

- ① 원고는 본 제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전액 입금시켜야 한다.
- ② 대금지급이 3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원고는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대 관 공서 입찰 물량 등의 대금 지급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원고 개발회사 주장요지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민사소송 제기 -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피고 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

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